

■ **업무내용**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임항,지항 등 산림 현황 조사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억원 이상	불가

1.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 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기술능력**

기술자격
1) 기술 중급 이상 산림 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 초급 이상 산림 경영기술자 2명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미 등록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3.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 ■ 업무내용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 등록기준

#### 1. 자본금

법인	개인
1억원 이상	불가

1.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 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기술능력

기술자격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미 등록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3. 시설·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

■ **업무내용**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3억원 이상	불가

1.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 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기술능력**

기술자격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미 등록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3. **시설·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

## 자연휴양림 등 조성

### ■ 업무내용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수목장림 조성

### ■ 등록기준

#### 1. 자본금

법인	개인
3억원 이상	불가

1.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 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기술능력

기술자격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미 등록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3.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 ■ 업무내용

도시숲에서의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숲의 조성·관리, 가로수의 조성·관리

### ■ 등록기준

#### 1. 자본금

법인	개인
1억원 이상	불가

1.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 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기술능력

기술자격
1)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미 등록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3. 시설·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

■ 업무내용

숲길 조성 · 관리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3억원 이상	불가

1.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 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기술능력

기술자격
1)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미 등록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3.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